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이 내용은 상장회사 및 증권시장과 관련된 각종 업무에 대한 실무처리방법 등을 정리하여 해설함으로써 주식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연재할 계획임 (편집자註).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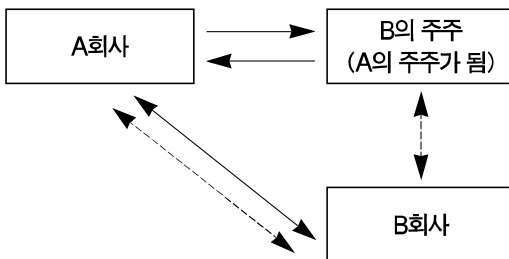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함)과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함)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법(2000. 1. 23. 제정)에 의해 금융회사에 우선 도입되었으며, 상법의 개정(2001. 7. 24)에 의해 모든 회사가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동 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적 지원책으로서 공개매수나 합병등 다른 방법에 비해 저비용으로 완전모자관계를 형성하는 지주회사의 창설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회사, 삼성부역, 디피씨 등에서 동 제도를 활용한 예가 있음.

### 1. 주식교환의 개념

기존의 A회사가 완전자회사로 되는 B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A회사에 100%이전하고 B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신주(또는 자기주식)를 배정을 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써 완전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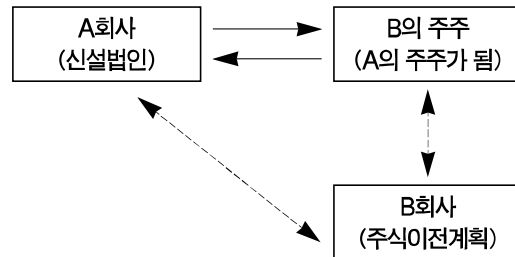
〈그림〉주식교환



## 2. 주식이전의 개념

기존의 B회사(또는 수 개의 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신설되는 A회사에 100%이전하고, B회사의 주주는 신설되는 A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써 완전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임.

〈그림〉주식이전



## 3. 제도의 유용성

주식교환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매수, 주식매집, 합병 등이 있으나 공개매수외나 매집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이에 응하지 않는 주주가 있을 경우 완전모자관계 형성이 불가능하고 막대한 주식취득비용이 발생됨.

또한 합병의 경우 조직의 비대로 규모의 불경제가 생기고, 이중의 사업이 한 회사에 뒤섞여 경영상의 비효율과 위험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주식교환이나 이전의 경우 개별주주와의 거래가 없으므로 저비용으로 완전모자회사관계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회사들의 법적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위험을 분산하면서 경영지휘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II. 주식교환

### 1. 주주총회까지 준비사항

- (1)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및 주주총회 소집결의(이사회 결의)  
주식교환을 위해서는 먼저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교환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3).

#### ▶ 주식교환계약서의 기재사항(상법 제360조의3)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 모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같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으로서 상법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음(상법 제360조의6), 「상법 제342조에 의해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할 자기주식」은 모회사가 합병이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단주의 처리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응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함(상법 제342조→제341조 2호~5호). 따라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나 퇴직하는 임직원으로부터 양수한 자기주식(상법 제341조의2)은 주식교환에 활용할 수 없으며 또 모회사는 주식교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액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이를 주식교환교부금이라 하며 모회사의 기존주주들과의 지분관계를 고려하거나 기타 이유로 자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이전받을 주식의 일부에 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금액을 의미함.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 '주식교환을 할 날'이란 주주총회가 승인을 하면 주식교환의 효력이 생기는 날을 의미하며, '주식교환을 할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권은 무효가 됨.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중간배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모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하게 되므로(360조의13) 당초의 임기까지 재임시키려 한다면 주식교환계약서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써 그 뜻을 기재해 두어야 함.

#### ▶ 신주 배정시 자기주식의 문제

-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한 경우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을 하면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이 문제될 수 있으나,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을 하고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6월 이내에 처분하면 됨(상법 제342조의2).
- ② 완전모회사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 제한을 받음(상법 제360조의7).

## (2)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에 동사실을 신고·공시(증권거래법 제186조,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 (3)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주권 소지자 등이 의결권, 매수청구권, 질권행사 등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설정되었음을 공고(상법 제354조 제4항).

## (4)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다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소액주주에게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1항 참조). 무의결권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에게는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만은 통지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 제5항).

### ▶ 주식교환승인 주총소집 통지·공고문의 기재사항 (상법 제360조의3)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2. 제36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반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 ▶ 경영 참고사항의 비치(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0 제3항)

### ▶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

주주총회 안건이 주식교환인 경우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5) 주식교환계약서 공시

주식교환당사회사에서는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에 응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4).

### ▶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의 사전공시 서류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6) 주주의 반대 의사 접수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

### ▶ 주식매수청구권의 의의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특정의 결의가 다수결로 성립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양수 또는 임대, 경영위임,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에 인정되며, 무의결권 우선주 소유주주에게도 주식매수권청구권이 인정됨(증권거래법 제191조).

## (7) 채권자보호절차 불필요

주식교환에 있어서는 자회사에는 전혀 자산의 변동이 없고, 모회사에서는 자회사의 주식이 이전되어 오히려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음.

## 2. 주식교환의 실행

### (1)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 결의

주식교환을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교환

계약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상법 제360조의3). 우선주 등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정함을 한 경우에는 당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상법 제436조).

## (2) 주주총회 결의결과 신고 등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가 종료되면 결의 결과를 증권거래소에 지체없이 신고(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 이내
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

### ▶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당해 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새로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편입시키거나, 자회사등이 당해 지주회사로부터 탈퇴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 (3) 주식매수 청구 및 매수대금 지급

### ① 주식매수 청구

주주총회 회일 전까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교환 승인주총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5,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 청구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지체없이 문서로서 신고(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20조).

### ②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주식매수대금은 주식매수청구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 제2항).

### ▶ 상장법인의 주식매수가격 결정방법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2항 및 제3항)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다만,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당해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매수가격의 조정의 신청은 주식매수대금 지급종료일의 10일전까지 하여야 함.

### ▶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가격 결정방법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제3항)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그러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매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 제3항).

## (4) 주권의 실효절차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각 통지(상법 제360조의8)

1.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① 주권 제출 공고·통지

완전자회사에서는 주식교환을 한 날의 1월 전에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무효가 된다는 뜻과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질권자에 게는 개별적으로 통지(상법 제360조의8).

② 주권실효의 효력발생시기

주식교환으로 인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권은 주식교환일날 무효가 됨.

▶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주권의 분실 등으로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가 없으면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상법 제442조 제1항).

③ 단주의 처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신주를 경매하여 지급. 그러나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에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음(상법 제443조).

(5) 주식교환 등기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자본증가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6) 주식교환 후 공시

주식교환 후 주식교환 당사회사는 주식교환을 한 날등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을 한 날부터 6월간 발행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에 응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12).

3. 신주의 발행 및 교부

(1) 주식교환신주의 발행 의뢰(명의개서대행기관)

(2) 주식교환 신주 배정 및 통지

완전자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하여는 주권의 실효절차가 종료되는 주권제출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교환신주를 배정하고 신주배정 내역을 통지.

▶ 주식교환시 질권의 효력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질권자는 주식교환 신주 또는 교부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등록질권자는 주권의 교부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0조의14).

▶ 구주권 제출 종료일과 주식교환을 할 날

주식교환의 효력은 완전자회사의 주권이 무효가 되는 주식교환일에 발생하므로 주식교환절차상 주식의 교환을 한 날은 구주권 제출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날이어야 함.

(3) 주식교환 신주 발행 및 교부

III.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

1. 간이주식교환

(1) 의의

간이주식교환은 주식교환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요건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전체 주주로부터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할 수 있음(상법 제360조의9).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전체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9).

주주는 이 공고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앞의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

수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0조의5).

### (3) 그밖의 일정

주식교환승인주주총회의 생략 및 간이주식교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 절차 이외의 주식교환절차는 앞의 주식교환 절차 참조.

## 2. 소규모주식교환

### (1) 의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완전모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상법 제360조의10).

### (2) 소규모주식교환의 제한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소규모주식교환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정식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필요함(상법 제360조의10).

- 주식교환교부금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

### (3) 주요 절차

소규모주식교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주식교환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10).

또한 주주에 대한 공시절차로서 존속회사에서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없이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10).

### (4) 주식매수청구의 문제

소규모주식교환 절차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상법 제360조의10).

### (5) 그밖의 일정

주식교환승인주주총회의 생략, 주식매수청구 불인정 이외의 주식교환 절차에 대하여는 앞의 주식교환의 절차 참조.

## IV. 주식이전

주식이전의 절차는 별첨 주식이전 일정표를 참조하고 일정별 설명은 주식교환에 대한 해설을 참조. 이하에서는 주식이전시 특히 고려할 사항만을 기술함.

### 1. 주주총회까지 준비사항

#### (1) 주식이전계획서 작성 및 주주총회 소집결의(이사회 결의)

주식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이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16).

#### ▶ 주식이전계획서서의 기재사항(상법 제360조의16)

##### 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 주식이전은 모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이므로 절대적 기재사항이 완비된 정관작성이 필요함(상법 제289조).

##### 2.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주식교환에 관한 설명 참조)

#####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액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이를 주식이전교부금이라 하며 주식이전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 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을 하고자 할 때 각 회사별 주주의 지분을 조정하기 위한 필요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금액(주

식이전의 경우에는 모회사가 신설되므로 자회사의 주식이외에는 다른 자산을 갖지 아니하므로 주식이 전교부금을 지급하지면 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두었다가 설립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이나 차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임)

#### 5. 주식이전을 할 시기

☞ '주식이전을 할 날'이란 주주총회가 승인을 하면 주식이전의 효력이 생기는 날을 의미하며, 주식이전을 할 날에 완전자회사 되는 회사들의 구주권은 무효가 되지만(주권의 실효절차) 주식이전의 효력은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함.

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 이는 수 개의 회사가 주식이전을 통해 공통의 모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을 예상한 규정으로 하나의 회사가 자기의 지주회사를 만들 실익은 크지 않으므로 오히려 수개의 회사가 공통의 지주회사를 만드는 경우를 예상한 규정인 바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그 예임.

#### (2) 주식이전계획서 공시

이사는 주식이전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에 의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17).

##### ▶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 사전공시 서류

1. 주식이전계획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상법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3) 모회사 설립 및 자본의 한도

주식이전의 경우 정관은 주식이전계획에 의해 정해지고, 자본은 자회사의 주식이전에 의해 구성되므로 주권실효절차만 밟으면 설립등기에 의해 모회사가 설립됨.

모회사의 자본은 주식이전의 날에 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함(상법 제360조의18).

#### (4) 주권의 실효절차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각 통지(상법 제360조의19)

1. 주주총회에서 이전을 승인하였다는 뜻
2.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 ▶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 및 무기명주식의 주주로서 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리는 주식교환 참조.

#### (5)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360조의20),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함(상법 제360조의21). 즉 등기를 한 날에 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에 귀속되고 자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의 주주가 됨.

▶ 기타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주식매수청구권, 사후공시 등은 주식교환 참조

〈별첨 1〉 주식교환 일정표

| 진행절차                            | 일정   | 주관처                 | 대상처                | 관련법규                                                           | 비 고                                                       |
|---------------------------------|------|---------------------|--------------------|----------------------------------------------------------------|-----------------------------------------------------------|
| 1.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              | D-16 | 위탁사                 |                    | 상법 362조                                                        |                                                           |
| 2.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             | D-16 | 위탁사                 | 금감위<br>거래소<br>(협회) | 증권거래법 제186조<br>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 사유발생 즉시                                                   |
| 3.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 D-16 | 위탁사                 |                    | 상법 제360조의3                                                     |                                                           |
| 4. 주식매수청구일정 통보                  | D-16 | 위탁사                 | 예탁원                | 상법 제360조의5<br>거래법 제174조의6<br>거래법 시행령 제78조의7                    |                                                           |
| 5.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 D-15 | 위탁사                 | 주주                 | 상법 제354조                                                       | 기준일 2주간 전                                                 |
| ※ 지주회사설립, 전환신청<br>(자회사 편입승인 신청) | D-15 | 위탁사                 | 공정위<br>금감위         | 독점규제법 제8조                                                      | ※자산 1천억 이상                                                |
| 6. 주식교환계획 통보                    | D-13 | 위탁사                 | 대행사                |                                                                | ①이사회 의사록 ②신문공고사본<br>③주식교환계약서사본                            |
| 7.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D    |                     |                    | 상법 제354조                                                       | 익일부터 주주명부폐쇄                                               |
| 8. 권리주주 확정                      | D+8  | 대행사                 |                    |                                                                | ※6영업일 이내                                                  |
| 9. 주주일람부 인계                     | D+10 | 대행사                 | 위탁사                |                                                                |                                                           |
| 10. 경영참고사항 비치                   | D+12 | 위탁사                 | 대행사<br>금감위<br>거래소  | 상법 제360조의4<br>거래법 제191조의10<br>발행및공시규정 제73조                     | 주총 종료일까지                                                  |
| 11. 주총소집 통지서 발송(공고)             | D+12 | 위탁사                 | 주주                 | 상법 제363, 360조의3, 436조<br>거래법 제191, 191조의10<br>발행및공시규정 제85, 90조 | 주총 2주전까지<br>①주식교환계약서 내용<br>②매수청구권 내용, 방법<br>※무의결권 우선주주 포함 |
| 12.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비치/공시            | D+12 | 위탁사                 | 본점                 | 상법 제360조의4                                                     | 주총 2주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br>6월 경과일까지                             |
| 13. 주식교환반대이사 통지 접수              | D+12 | 위탁사                 | 주주                 | 상법 제360조의5<br>증권거래법 제191조                                      | ※주총 전일까지                                                  |
| 14. 주주총회 개최                     | D+27 | 위탁사                 |                    | 상법 제360조의3, 434조                                               | 주식교환계약서승인<br>(특별결의)                                       |
| 15. 주주총회결과 보고                   | D+27 | 위탁사                 | 금감위<br>거래소<br>(협회) | 발행및공시규정 제69조<br>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 주총결의후 즉시                                                  |
| 16. 주식교환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 D+27 | 위탁사                 | 주주                 | 상법 제360조의5, 374조의2<br>증권거래법 제191조<br>발행및공시규정 제95조              |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br>※무의결권 우선주주 포함                           |
| 17. 구주권 실효 공고·통지                | D+28 | 위탁사                 | 주주<br>질권자          | 상법 제360조의8                                                     | ※주식교환일 1월 전                                               |
| 18. 주식매수청구권행사내역 보고              | D+47 | 위탁사                 | 금감위<br>거래소         | 발행및공시규정 제69조<br>유가증권상장규정 제20조                                  | 주식매수청구가 있는 때<br>대수가격결정이 있는 때                              |
| 19. 주식매수가액 지급                   | D+57 | 위탁사                 | 주주                 | 상법 제360조의5, 374조의2<br>증권거래법 제191조                              | 주식매수청구후 1월 이내<br>※구주권제출 종료일 전일까지                          |
| 20. 주권의 실효절차 종료                 | D+58 | 위탁사                 | 주주                 | 상법 제360조의8                                                     | 구주권실효 : 주식교환일                                             |
| 21. 주식교환 기준일                    | D+58 | 위탁사                 |                    |                                                                |                                                           |
| 22. 주식교환일                       | D+59 | 위탁사                 |                    | 상법 제360조의8                                                     | ※교환효력발생 : 주식교환일                                           |
| 23. 주식교환서류 사후공시                 | D+60 | 위탁사                 |                    | 상법 제360조의12                                                    | 주식교환일로부터 6월간                                              |
| 24. 주식교환 등기                     | D+60 | 위탁사                 | 법원                 |                                                                |                                                           |
| 25. 신주발행 의뢰                     | D+67 | 위탁사                 | 대행사                |                                                                |                                                           |
| 26. 신주배정명세서작성 및 배정통지            | D+69 | 대행사                 | 위탁사<br>주주          |                                                                |                                                           |
| ※주권발행전 상장(등록)시 신청               | D+70 | 위탁사                 | 대행사<br>거래소<br>(협회) | 거래법 제174의3 제4항<br>유가증권상장규정 제9조<br>협회등록규정 제9조                   | 상장일 : 신청후 약4일후<br>예탁자제외부 기재확인 첨부                          |
| 27. 가세계약 및 용지교부 신청              | D+70 | 위탁사                 | 가세소<br>대행사         | 통일규격유가증권<br>취급규정 제4, 8, 9조                                     | 문안등록(증권거래소)<br>※발행일 : 주권의 실효절차 종료일<br>익일                  |
| 28. 주권가세 및 납품                   | D+75 | 위탁사<br>대행사          |                    | 상법 제356조                                                       |                                                           |
| ※주권발행후 상장(등록)시 신청               | D+75 | 위탁사<br>거래소<br>(협 회) |                    | 유가증권상장규정 제9조<br>협회등록규정 제14조                                    | 견양주권 포함<br>상장(등록)일 : 교부일 익일                               |
| 29. 주권교부 개시일                    | D+80 |                     | 주주                 |                                                                |                                                           |

〈별첨 2〉 주식이전 일정표

| 진행절차                            | 일정   | 주관처        | 대상처                | 관련법규                                                           | 비 고                                                       |
|---------------------------------|------|------------|--------------------|----------------------------------------------------------------|-----------------------------------------------------------|
| 1. 주식이전을 위한 이사회 결의              | D-16 | 위탁사        |                    | 상법 362조                                                        |                                                           |
| 2.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             | D-16 | 위탁사        | 금감위<br>거래소<br>(협회) | 증권거래법 제186조<br>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 사유발생 즉시                                                   |
| 3. 주식이전계획서 작성                   | D-16 | 위탁사        |                    | 상법 제360조의16                                                    |                                                           |
| 4. 주식매수청구일정 통보                  | D-16 | 위탁사        | 대행사                | 상법 제360조의5, 360조의22<br>거래법 제174조의6<br>거래법 시행령 제78조의7           |                                                           |
| 5.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 D-15 | 위탁사        | 주주                 | 상법 제354조                                                       | 기준일 2주간전                                                  |
| ※ 지주회사설립, 전환신청<br>(자회사 편입승인 신청) | D-14 | 위탁사        | 공정위<br>금감위         | 독점규제법 제8조                                                      | ※자산 1천억 이상                                                |
| 6. 주식이전계획 통보                    | D-13 | 위탁사        | 대행사                |                                                                | ①이사회 의사록 ②신문공고사본<br>③주식교환계약서사본                            |
| 7.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D    |            |                    | 상법 제354조                                                       | 익일부터 주주명부폐쇄                                               |
| 8. 권리주주 확정                      | D+8  | 대행사        |                    |                                                                | ※6영업일 이내                                                  |
| 9. 주주일람부 인계                     | D+10 | 대행사        | 위탁사                |                                                                |                                                           |
| 10. 경영참고사항 비치                   | D+12 | 위탁사        | 대행사<br>금감위<br>거래소  | 거래법 제191조의10<br>발행및공시규정 제73조                                   | 주총 종료일까지                                                  |
| 11. 주총소집 통지서 발송(공고)             | D+12 | 위탁사        | 주주                 | 상법 제363, 360조의6, 436조<br>거래법 제191, 191조의10<br>발행및공시규정 제85, 90조 | 주총 2주전까지<br>①주식이전계획서의 내용<br>②매수청구내용 및 방법<br>※무의결권 우선주주 포함 |
| 12. 주식이전계약서 등의 비치/공시            | D+12 | 위탁사        | 본점                 | 상법 제360조의17                                                    | 주총 2주전부터 주식이전일 이후<br>6월 경과일까지                             |
| 13. 주식이전반대회사 통지 접수              | D+12 | 위탁사        | 주주                 | 상법 제360조의22, 360조의5<br>증권거래법 제191조                             | ※주총 전일까지                                                  |
| 14. 주주총회 개최                     | D+27 | 위탁사        |                    | 상법 제360조의16, 434조                                              | 주식이전계획서승인<br>(특별결의)                                       |
| 15. 주주총회결과 보고                   | D+27 | 위탁사        | 금감위<br>거래소<br>(협회) | 발행및공시규정 제69조<br>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 주총결의후 즉시                                                  |
| 16. 주식이전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 D+27 | 위탁사        | 주주                 | 상법 제360조의22, 360조의5,<br>374조의2<br>증권거래법 제191조<br>발행및공시규정 제95조  |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br>※무의결권 우선주주 포함                           |
| 17. 구주권 실효 공고·통지                | D+28 | 위탁사        | 주주, 질권자            | 상법 제360조의19                                                    | ※주식교환일 1월 전                                               |
| 18. 주식매수청구권행사내역 보고              | D+47 | 위탁사        | 금감위<br>거래소         | 발행및공시규정 제69조<br>유가증권상장규정 제20조                                  | 주식매수청구가 있는 때<br>매수가격결정이 있는 때                              |
| 19. 주식매수가액 지급                   | D+57 | 위탁사        | 주주                 | 상법제360조의22, 374조의2<br>증권거래법 제191조                              | 주식매수청구후 1월 이내<br>※구주권제출 종료일 전일까지                          |
| 20. 주권의 실효절차 종료                 | D+58 | 위탁사        | 주주                 | 상법 제360조의19                                                    | 구주권 실효주식이전일                                               |
| 21. 주식이전 기준일                    | D+58 | 위탁사        |                    |                                                                |                                                           |
| 22. 주식이전일                       | D+59 | 위탁사        |                    | 상법 제360조의19                                                    |                                                           |
| 23. 주식이전서류 사후공시                 | D+59 | 위탁사        |                    | 상법 제360조의22                                                    | 주식이전일로부터 6월간                                              |
| 24. 주식이전 등기                     | D+59 | 위탁사        | 법원                 | 상법 제360조의20,<br>360조의21                                        | 2주내에 등기<br>※주식이전의 효력발생 : 등기                               |
| 25. 신주발행 의뢰                     | D+66 | 위탁사        | 대행사                |                                                                |                                                           |
| 26. 신주배정명세작성 및 배정통지             | D+68 | 대행사        | 위탁사, 주주            |                                                                |                                                           |
| ※주권발행전 상장(등록)시 신청               | D+70 | 위탁사        | 예탁원<br>거래소<br>(협회) | 거래법 제174의3 제4항<br>유가증권상장규정 제9조<br>협회등록규정 제9조                   | 상장일 : 신청후 약4일후<br>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 첨부                          |
| 27. 가세계약 및 용지교부 신청              | D+70 | 위탁사        | 가세소<br>대행사         | 통일규격유가증권<br>취급규정 제4, 8, 9조                                     | 문인등록(증권거래소)<br>※발행일 : 주권의 실효절차 종료일<br>익일                  |
| 28. 주권가세 및 납품                   | D+75 | 위탁사<br>대행사 |                    | 상법 제356조                                                       |                                                           |
| ※주권발행후 상장(등록)시 신청               | D+75 | 위탁사        | 거래소<br>(협 회)       | 유가증권상장규정 제9조<br>협회등록규정 제14조                                    | 건양주권 포함<br>상장등록일 : 교부일 익일                                 |
| 29. 주권교부 개시일                    | D+80 |            | 주주                 |                                                                |                                                           |

〈집필자 : 법제조사과 주임 이재혁〉